

| |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11 호 |
| 의결연월일 | 2006.3.20 |

의결사항

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자 | 성재윤의원 외6인 |
| 발의연월일 | 2006. 3 . 7 |

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제11호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06. 3. 7

발의자: 성재윤,최갑현,이인효,김
석관,이삼수,김현철,이문상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19322 : 2006. 1. 1)되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
-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(2006. 1. 31. 개정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회의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“회의수당”을 각각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15조중 “사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”를 “「사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」
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직무"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.</p> <p>2. "<u>회의수당</u>"이라 함은 영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.</p> <p>3. "유족"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를 말한다.</p> <p>제 4 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(생략)</p> <p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<u>회의수당</u> 2년분 상당액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<u>회의수당</u>의 1년분 상당액</p> <p>3.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조(---)-----</p> <p>1.-----</p> <p>2. "<u>월정수당</u>"-----</p> <p>3.-----</p> <p>제4조(-----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<u>월정수당</u>-----</p> <p>2.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<u>월정수당</u>-----</p> <p>3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|

관련법령발취

◎대통령령 제19322호
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,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7670호, 2005. 8. 4. 공포, 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(안 제15조제1항제3호)

- (1)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(2)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하고, 동 기준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.
- (3) 월정수당의 지급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나.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15조의2 신설)

- (1)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함.
- (2)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·의회의원·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함.
- (3)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다.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·장애 보상금의 지급기준 변경 등(안 제15조의3제1호·제2호, 현행 제45조 삭제)

- (1)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함.
- (2) 「지방재정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방채발행계획 규정을 삭제함.

3. 시행일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